

광주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20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안수

변 론 종 결 2023. 9. 19.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2020. 9. 22.자 금전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 1) 피고는 C의 자녀이다.
- 2) 피고는 2019. 3. 8.부터 'D' 상호로 금형제조회사를 운영 중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주)E과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699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주)E은 219,783,749원과 그 중 114,246,067원에 대하여 2022.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C는 (주)E과 연대하여 위 기재 돈 중 155,157,783원과 그 중 114,245,667원에 대하여 2022.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2.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 취득 과정

- 1) C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165,850,000원의 낙찰가가 정해지자, 피고는 위 경매과정에 참여하여 2020. 8. 10. 입찰보증금 12,180,000원을, 2020. 9. 23. 나머지 입찰대금 153,67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 2) 피고는 2020.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번호 제102377호로 2020. 9.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는 (주)H으로부터 109,000,000원을 대출받고, (주)H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번호 제102379호로 근저당권자 (주)H, 채권최고액 119,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음에 있어 C로부터 3,700만 원을 증여받았다. C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3,700만 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C로부터 3,700만 원을 증여받아 매수하였고, 그러한 피고와 C 사이의 3,700만 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C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또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가액배상금으로 특정한 3,7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C와 피고 사이에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낙찰대금 165,850,000원을 납부함에 있어, 2020. 7. 27.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천만 원(을 제4호증), (주)H으로부터 대출받은 108,900,000원(갑 제16호증), 피고의 거래처 I(을 제4호증)로부터 입금 받은 3,700만 원, 피고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한 1,120만 원을 등이 그 자금의 원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위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② 원고는 피고가 낙찰대금의 출처를 위와 같이 주장하자 “I(을 제4호증)로부터 입금 받은 3,700만 원”은 C가 수령할 돈을 피고가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을 가액배상 금액으로 특정하고, 갑 제20호증(녹취록)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 대화내용 어디를 살피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채무자 C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여전히 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나, C가 피고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거론하는 여러 정황들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의 추측 내지 가정에 불과하다(피고는 '오히려 C가 D를 소유한다면, C의 무자력 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